

[서식 예] 저작권 등록무효 확인의 소

소 장

원 고 O O O(주민등록번호) OO시 OO구 OO길 OO (우편번호 OOO - OOO)

피 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(우편번호 ○○○ - ○○○)

저작권등록무효 확인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피고가 소외 □□□에게 20○○. ○. ○. 한 저작권 등록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- 1. 이 사건 처분의 경위
 - 가. 소외 □□□은 20○○. ○. ○. 원고의 저작물과 유사한 이 사건 사진식자기 배열표와 타이프 글자판 배열표를 개발하여 피고에게 저작권 등록신청(이하 "이 사건 등록신청"이라 합니다)을 하였고, 피고는 같은 달 ○. 이를 받아들 여 등록처분을 하였습니다.
 - 나. 그러나 위 소외인의 저작권 등록신청 및 피고의 등록처분으로 원고가 기존에 개발하여 저작권등록을 하였던 사진식자기 배열표와 타이프 글자판 배열표의



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관련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침해되었습니다.

2. 피고처분의 부당성

- 가. 저작권법 제2조는 저작물이라 함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물건은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에 관한 창작적인 표현물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.
- 나. 그러나 소외인의 이 사건 등록신청한 사진식자기 배열표와 타이프 글자판 배열표는 종래 원고나 국내 각 인쇄소 또는 신문사 등에서 사용하던 한글 문자판의 배열순서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으며, 특성있게 제작한 그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창작된 사상의 표현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.

3. 결 론

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무효의 처분입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 저작연월일 등록신청서

1. 갑 제2호증 저작권 등록 통지서

1. 갑 제3호증 사진

1. 갑 제4호증 설명서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 각 1통

1. 소장부본 1통

1. 납 부 서 1통



20 O O 년 O 일 O 인 인 (인)

○ ○ 행정법원 귀중

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제소기간	※ 아래(2) 참조	
청 구 인	피처분자	피청구인	행정처분을 한 행정청	
제출부수	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 큼의 부본 제출	관련법규	행정소송법 9 ~ 34조	
비 용	·인지액: 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·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			
불복방법 및 기 간				

※ (1) 관할법원(행정소송법 9조, 38조)

- 1. 무효확인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. 다만, 중앙행정기관,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과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2.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무효 등확인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

※ (2) 제소기간(행정소송법 20조, 38조)

- 1. 무효등확인소송의 제소기간은 제한이 없다. 다만 처분의 무효선언을 취소소송의 형식으로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음. 따라서 무효선언을 취소소송의 형식으로 제기할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.
- 2. 제1항 단서의 경우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(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)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